

자연법과 전쟁*

-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을 중심으로 -

김 응 종**

1. 머리말
2. 근대 자연법의 등장
3. 정당한 전쟁론
4. 전쟁의 권리에서 전쟁의 법으로
5. 맺음말

1. 머리말

1956년 영국 역사가인 마이클 로버츠는 1560~1660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군사전술과 전략상의 급격한 변화가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추동했다는 ‘군사혁명론’(Military Revolution)을 제창했다. 그는 주로 스웨덴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38).

** 충남대 사학과(서양사) 교수.

주장을 동시대의 네덜란드에 적용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대 초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전쟁과 식민지쟁탈전쟁을 동시에 수행한, 그야말로 선도적인 전쟁국가였기 때문이다. 찰스 틸리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566년부터 1697년까지 무려 27차례나 전쟁을 벌였다.¹⁾ 주요 상대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잉글랜드였다. 에스파냐와의 전쟁은 독립전쟁이었고, 포르투갈과의 전쟁은 신생국 네덜란드가 해상제국 포르투갈에 맞선 전쟁이었으며,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신흥강국 잉글랜드의 도전을 받아 일어난 전쟁이었다. 물론, 유럽국가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의 전쟁은 특히 해상 무역 및 식민지 쟁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혁명론을 확대하면, 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근대 초의 빈번한 전쟁과 근대 초에 만개한 자연법 사상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본 논문은 근대 자연법의 창시자이자 국제법의 아버지로 알려진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²⁾를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의 삶 역시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로티우스는 홀란드의 도시 델프트의 부유한 지배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네덜란드 북부 주들이 에스파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벌인 투쟁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해외 무역과 군사행동에도 참가했다. 그로티우스는 15살 때 저명한 정치가인 올든바르너 벨트를 따라 프랑스를 방문했으며³⁾, 1601년에는 홀란드의 독립을

1) 찰스 틸리, 윤승준 옮김, 『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새물결, 2000, 125쪽.

2) 네덜란드어 이름은 하위흐 더 흐로트(Huig de Groot)이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라틴어를 사용하여 책을 썼으며, Grotius라는 라틴어 이름을 사용하였다.

3) 이때 앙리 4세는 그를 “홀란드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과시하기 위해 신설된 공식 라틴어 역사가로 임명되었다. 변호사로도 활동했는데, 올든바르너벨트, 동인도회사, 나사우의 마우리츠공(公) 같은 유력인사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그로티우스는 1602년에 사촌인 헤임스케르크가 일본에서 구리를, 중국에서 비단과 자기를, 그리고 멕시코와 페루에서 금을 싣고 오던 포르투갈의 대형선박을 나포한 사건을 담당했으며, 1613년에는 영국 선박이 그린란드 부근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박을 나포하자 항의단을 이끌고 런던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현실 정치상의 경험이 그의 저작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의 국내정치에도 관여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 내의 종교적인 대립은 내란 수준으로 심해졌다.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인 홀란드의 주의회 의장(Grand Pensionary)인 올든바르너벨트와 그로티우스를 위시한 소위 ‘청원파’는 에스파냐의 전제정을 몰아내도 그것이 불관용적인 칼뱅파의 지배로 대체된다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종교적인 관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독((Statholder)에게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⁴⁾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올든바르너벨트는 사형당했고, 그로티우스는 종신형을 언도받아 1618년에 남부의 루베슈타인성에 수감되었으나, 3년 후에 탈출하여 파리에 정착했다.⁵⁾

이 시대의 감옥은 학교였다. 그로티우스는 1603년에 동인도회사의

4) Statholder란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는 원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파냐 왕의 대리인(Statholder)이 통치했다. 그후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지만 Statholder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원칙적으로 각 주마다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주마다 Statholder를 뽑았으나, 실제로는 오란예 가문에서 모든 주의 Statholder 독차지했다.

5) 그의 탈출 이야기는 매우 낭만적이다. 그로티우스의 부인은 책을 잔뜩 담은 큰 통을 가지고 면회를 왔고, 그 통에 체구가 작은 그로티우스를 담아 성 밖으로 탈출했다.

의뢰로 작성한 필사본⁶⁾을 토대로 『전쟁과 평화의 법』(De Iure Belli ac Pacis)을 썼고, 1625년에 파리에서 출판했다. 이 책은 17세기에만 26개의 라틴어 판본이 출판되었고,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 등으로 번역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스웨덴 국왕인 구스타프 아돌푸스는 베개 밑에 성서와 이 책을 놓고 읽었으며, 팔츠 선제후는 이 책의 주석서를 출판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특별 강좌를 마련할 정도였다. 18세기에도 이 책의 인기는 계속되어 라틴어판, 영어판, 불어판, 독일어판, 이탈리아어판이 계속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 18세기 독자들에게 결정적인 판본은 1706년에 사무엘 푸펜도르프의 『자연법과 만민법』을 펴낸 장 바르베라크가 1720년에 펴낸 라틴어 판본이었다. 이 두 책은 계몽주의 시대에 정치사상의 백과사전이 되었다.⁷⁾

1631년, 그로티우스는 마우리츠의 후임 총독인 빌렘(프레데릭 윌리엄)이 복권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귀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635년 당시 북유럽의 초강대국이었던 스웨덴 정부는 그를 주(駐)프랑스 대사로 임명했고, 그로티우스는 30년 전쟁 후반기의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1644년 왕위에 오른 크리스티나가 그를 대사가 아닌 다른 직에 임명하려 하자 그로티우스는 재임용을 요구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난파를 당하여 1년 후 사망했다. “나는 많은 것을 시도했으나

6) 이 필사본의 제12장은 『자유로운 바다』(Mare Liberum)라는 제목으로 1609년에 출판되었고, 나머지는 1864년에 발견되어 『노획의 권리』(De Iure Praedas Commentariu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7)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Book 1,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Richard Tuck from the Edition by Jean Barbeyrac,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5, “Introduction”, p.x. 이 책은 3권으로 출판되었다. 라틴어 Jus는 ‘법’이라는 뜻과 ‘권리’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어떤 사람은 『전쟁과 평화의 법』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과 평화의 권리』라고 번역한다. Jus를 ‘법’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권리’로 보는 것이 옳은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하였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가 최후의 말이었다.

그로티우스는 변호사, 정치가, 외교관으로서 ‘전쟁의 시대’를 겪었고, 50여 권의 책과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특히 『노획의 권리』와 『전쟁과 평화의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획의 권리』는 1864년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에 17세기와 18세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다. 어린 루소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고전 역시 『전쟁과 평화의 법』이었다. 이 책은 그로티우스의 모든 사상이 종합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중심으로 그로티우스의 전쟁관을 분석한 것이다. 리차드 퉁은 그로티우스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호전적이었다고 말하는데⁸⁾, 왜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2. 근대 자연법의 등장

자연법(natural law, *lex naturalis*)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nature)이나 물리적 본성(nature)로부터 자연적으로(naturally) 도출되는 법이다. 또는 더 간단히 정의하면, 자연(nature)이 가르쳐주는 법이다. 그러하기에 자연법은 불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실정법(positive law)에 선행하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법이다.⁹⁾ 자연법사상이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스토아

8)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95. “그는 헤이그에 있는 평화 궁전의 수호성인이 되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9) Lorraine Daston, Michael Stolleis(ed.), *Natural Law and Laws of Nature in Early Modern Europe*, Ashgate Publishing Company, Burlington, 2008, 서문, pp.5~6.

철학자들의 논의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 덕(virtue)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도달한다.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러한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연법 이론은 중세의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그리스도교 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fall) 이전에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가능했으나 타락 이후에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법과 은총에 의해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자연법과 신법을 구분했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신의 존재, 신의 의지, 신과 인간의 합일 등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와 초자연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신법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기에, 자연법을 통해 신의 영원한 법에 참여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법의 원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반면, 스콜라 철학자들은 자연법과는 별도로 신법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신법을 자연법의 상위법이자 그 원천으로 이해했다. 근대에 들어 자연법에 대한 논의가 만개한다.¹⁰⁾ 근대의 자연법사상은 크게 보아 스콜라적인 자연법에서 스토아적인 자연법으로의 복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건이 된 것은 당연히 자연법과 신법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자연법을 신법의 후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법의 세속화는 그로티우스의

10) *ibid.*, 3. 필자들은 근대에 들어 자연법 논의가 만개한 배경으로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논쟁, 절대군주의 등장,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충격, 주의주의 신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자연법사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말한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신이 없으며 신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고 감히 가정해도 - 이것이야말로 극도로 사악하지 않고서야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 일어날 것이다.¹¹⁾

그로티우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과감한 가정으로 인해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의 역사에서 근대적이며 세속적인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무엘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는 스콜라 철학의 그림자로부터 자연법을 떼어낸 위대한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은 무관심하다는 가정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적어도 14세기 중엽 이래 스콜라 신학자들의 신학 논쟁에서 자주 등장했으며¹²⁾, 가브리엘 바스케즈나 프란시스코 수아레즈 같은 근대의 사상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¹³⁾

그로티우스 가설의 독창성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자연법사상이 세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티우스는 자신의 과감한 가설에 뒤이어 곧바로 신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고 자연법은 신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법이라고 덧붙이지만, 이러한 식의 글쓰기는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안전

11)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p.89~90. 그로티우스는 이 진술에 뒤이어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과감성을 포기하지만, 그렇다고 그 진술의 역사적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것 [신이 없으며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의 반대가 한편으로는 이성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진통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나며, 모든 시대를 통해 입증된 논지들과 기적들이 그것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존재와 소유물의 원천이신 신을 모든 것에서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12)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UP, 1980, p.43.

13) Francis Oakley, *Natural Law, Laws of Nature, Natural Right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History of Ideas*, Continuum, New York, 2005, p.65.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서문”에 뒤이어 본문 제 1장에서는 더 과감하게 말한다.

자연법은 불변이기 때문에 신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힘이 무한하다고 해도 이 무한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예컨대,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2 더하기 2가 4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악하지 않게 할 수 없다. 신도 자연법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자연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신법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자연법의 하위법이 된다. 신이란 본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와 신의 자의적인 개입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그로티우스의 과감한 진술은 ‘근대의 탄생’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로티우스의 근대적 자연법은 스콜라적 자연법과 달리 더 이상 신에게서 기원하지 않는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의 어머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¹⁵⁾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사상이 지니는 근대성은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로티우스를 국제법 사상가로 자리매김해 준 책은 1609년에 출판한 『자유로운 바다』(Mare Liberum)이다. 그로티우스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160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포르투갈 상선 산타카타리나호를 나포한 사건이었다. 국가가 아닌 동인도 회사의 무력사용이 정당한지, 강제 노획이 정당한지를 둘러싸고 네덜란드 안팎에서 법적 도덕적 논란이 일어나자, 동인도회사는 변호사 그로티우스에게 나포와 노획을 정당화시켜줄 것을 의뢰했고, 그로티우스는 “정의의 자연적인

14)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155.

15) *ibid.*, 서문, 제17장.

원칙” 즉 자연법에 근거하여 동인도회사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 이러한 주장이 들어 있는 책이 바로 『노획의 권리』이며 그 일부가 『자유로운 바다』이다. 이 책에서 그로티우스는 바다는 국제적인 영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무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⁶⁾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항해의 자유에 대한 최초의 고전적인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¹⁷⁾ 이러한 논리는 네덜란드가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각국의 무역 독점을 깨뜨리고 자기의 독점을 세우는 데 기여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국제법의 등장을 알린 책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이 당시로서는 가장 완벽한 국제법 저술이었다고 평가했다.¹⁸⁾ 사실,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제 관계라는 것은 국가간의 전쟁과 평화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국제법의 핵심 문제인 것이다.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쓴 동기는 전쟁의 ‘권리’를 인정하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법’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을 『전쟁과 평화의 권리』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법』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이다.¹⁹⁾

해상 무역과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던 17세기의 세계는 홉스가 정의한 ‘자연상태’와 다르지 않았다. 열강들은 전쟁에 대한 ‘자연권’을

16) 당시 세계무역의 지배권을 놓고 네덜란드와 경쟁하던 잉글랜드는 이러한 관념에 반대하고 바다도 땅과 마찬가지로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후 바다의 소유권은 대포의 사거리인 3해리로 결정되었다.

17) Wikipedia의 “Grotius”. 그로티우스가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모든 나라는 인도양과 그밖의 다른 아시아 바다에서 자유로운 항해권을 받아들였지만 항해자유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그로티우스다. 그로티우스의 바다의 자유 개념은 대체로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18) *ibid*.

19) 이 글에서 참고한 리차드 톡은 “권리”라고 번역한 반면, Francis Kelsey (Carnegie edition, 1925), A. C. Campbell(London, 1814), John Miller(*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등은 “법”이라고 번역하였다.

가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의 ‘자연법’,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의 서문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야만인들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무질서하고 무자비한 전쟁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본다. 사람들은 하찮은 이유나 있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무기를 찾는다. 일단 무기를 잡으면, 신의 법에 대해서건 인간의 법에 대해서건 아무런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는다. 마치 그 순간부터는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도 되다는 허가를 받은 듯이 말이다.²⁰⁾

이렇게 국가이익과 힘이 법인 약육강식의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과 용서의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주의를 외칠 것인가? 그로티우스는 요하네스 페루스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평화주의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²¹⁾ 역사와 관습과 문화가 상이한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스도교 세계의 법을 이슬람 세계에 강요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세계의 법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힘’이 정의요 ‘전쟁’이 유일한 중재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전쟁’의 수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범이 없었다. 그로티우스는 프랑스의 리슐리외 추기경이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약자가 언제나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²²⁾ 작금의 무질서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질서, 달리 말하면,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로티우스는 그것이

20)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106.

21) *ibid.*, pp.106~107.

22) John Miller, “Hugo Grotiu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자기의 과제임을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다.

로마인들의 시민법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민법이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석서나 요람의 형태로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나 나라들의 지배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은,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유래했건, 신의 명령으로 제정되었건, 관습과 묵시적인 동의로 도입되었건, 인류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²³⁾

이제 그로티우스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특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시아인들과 같은 비그리스도교인들과 접촉하면서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자연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던 상황에서, 그로티우스의 세속적 자연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은 자연법은 신법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비그리스도교인들을 도덕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자연법은 모든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에게,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²⁴⁾ 그로티우스의 세속적 자연법은, 말 그대로, 보편적이었다.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국제 관계는 신중함과 편의주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도덕과 법에 의해서도 지배된다. 그로티우스는 전쟁이나 무력이 아니라 법과 동의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 관계를 정립한 최초의 인물이다. 후일 “그로티우스적 전통”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23)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75.

24) *ibid.*

합리주의적 관념은 베스트팔렌 평화에서 구체화되었다.²⁵⁾

3. 정당한 전쟁론

그리스도교는 평화의 종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내밀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전쟁의 문제는 양심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에는 “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따라서 군인이 될 수 없다”는 평화주의를 택하며 군대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학자들은 전쟁의 불가피함을 변호하기 위해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어적이며 불의를 바로잡는 전쟁, 공적인 인물이 수행하는 전쟁, 참된 정의가 구현되는 평화를 세우기 위한 전쟁, 세속의 왕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신의 왕국을 위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정당한 전쟁론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전쟁으로 한정되는 것이었지만, “정의로운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가미되면서 공격적인 전쟁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했다. 특히 이교도들이 그러한 정의로운 전쟁의 특권적 대상이었다. 12세기의 성인인 베르나르두스는 “이교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죽이는 것”이라며 전쟁을 부추길 정도였다.²⁶⁾ 토마스 아퀴나스는 필요하다면 가장

25) Wikipedia의 “Grotius”

26) Franco Cardini, “Guerre et Croisade”, in Jacques Le Goff, Jean-Claude Schmitt(ed.), *Dictionnaire raisonné de l'Occident médiéval*, Fayard, 1999, p.439.

성스러운 날에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²⁷⁾

그로티우스는 전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교가 전쟁을 금하지 않았음을 온갖 자료와 논리를 동원하여 증명한다. 예컨대, 모세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동족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지 이민족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며,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내밀어라” 하는 말은 얻어맞은 당사자에게 한 말이지 행정관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⁸⁾ 그로티우스는 에라스무스 같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다.²⁹⁾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라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로티우스에게 중요한 문제는 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없애는 것이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은 전반부는 ‘정당한 전쟁’을, 후반부는 ‘부당한 전쟁’을 다룬다. 제1권에서는 “전쟁은 무엇인가, 법은 무엇인가” “전쟁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사적인 전쟁과 공적인 전쟁”, “신하의 군주에 대한 전쟁” 등을 다룬 다음, 제2권의 제1장 “전쟁의 원인들”에서, “방어, 회복, 처벌”의 세 가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전쟁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로티우스의 전쟁관은 제20장 “처벌”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왕, 그리고 왕의 권력에 상응하는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가해진 위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자연법이나

27) Philippe Contamine, *War in the Middle Ages*, translated by Michael Jones, Basil Blackwell, 1984, p.273.

28)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p.196, 209.

29) 그로티우스는 에라스무스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보았지만,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전쟁은 반대하면서도 터키와의 전쟁은 반대하지 않았다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30~31).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처벌권은 처음에는 사람들 각자에게 있었지만 시민사회와 법정이 설치된 이후에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가 야수성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던 소그디안 같이 부모들에게 비인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디오도루스가 전하는 대로 헤라클레스가 고대 갈리아인들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관습인 인육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 여기까지 우리는 자연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인노켄티우스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른다. 이러한 생각은 비토리아, 바스케즈, 아조리우스, 몰리나의 생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는 사람 본인이나 그의 나라가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처벌권은 본래 시민적 사법권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처벌권은 자연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³⁰⁾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전쟁이란 약탈을 위해서건 영광을 위해서건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방어하는 전쟁이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그의 행위가 자연법에 어긋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법을 어긴 사람들, 예컨대, 독재자, 식인종, 해적, 양민학살자, 반인륜적인 자식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근대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토착민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었다.

30)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2권, pp.1021~1024.

그로티우스의 호전성은 정당한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계보 위에서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인노첸티우스 4세는 남색이나 우상숭배는 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인 교황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반면에 비토리아, 바스케즈, 아조리우스, 몰리나는 영광을 추구하는 전쟁, 불안에 기인한 예방전쟁, 야만인들에 대한 전쟁 등을 부당한 전쟁으로 구분한 인물이다.³¹⁾ 리처드 퉁에 의하면, 근대초 유럽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념은 인문주의 전통과 스콜라철학 전통으로 구분된다. 인문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시민법 교수였던 알베리코 젠틸리이고, 스콜라 철학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은 포르투갈 에보라 대학의 신학과 철학 교수였던 몰리나이다. 스콜라 철학 전통에 비해 인문주의 전통은 방어적인 정당한 전쟁을 넘어, 선제타격, 영광을 추구하는 전쟁, 인간사회의 이익을 위한 전쟁, 자연법을 지키는 전쟁 같은 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호전적인 성향을 보였다.³²⁾ 그로티우스는 자신이 이러한 호전적인 인문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자연법이란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래, 자연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자기보존을 위해서이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그로티우스는 원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이방인들이 우리의 소유지 안에 있는 황무지나 불모지를 요구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작되지 않고 있는 땅은 소유지라고 인정될 수 없기

31)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52~60.

32) *ibid.*

때문이다.³³⁾

마찬가지 논리로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원주민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감옥에 있을 때 작성한 『그리스도교의 진리』(De Veritate Religionis Christianae)(1622)에서 이미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많은 노동이나 비용 없이도 쉽게 이루어진다. 신이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허용하신 것들을 우리는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몇몇 철학자들이 어리석게 주장하듯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빌려줌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³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경작하지 않고 놀리면서 다른 사람의 경작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니, 이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로 작용하였다. 막스 베버도 지적했듯이, 근대자연법 사상이 유럽국가들이 세계 지배를 위해 경쟁을 벌이던 시대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³⁵⁾ 아우구스티누스의 종교적인 “정당한 전쟁” 개념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합법적인 전쟁”에 의해 대체된다. 근대에 들어, 전쟁의 정당성 여부는 교회의 뜻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³⁶⁾

33)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2권, p.448.

34)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106에서 재인용.

35) *ibid.*, p.14.

36) Franco Cardini, “Guerre et Croisade”, p.448.

4. 전쟁의 권리에서 전쟁의 법으로

그로티우스에게 이르러 정당한 전쟁의 ‘권리’가 비로소 인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정당한 전쟁의 역사에서 그로티우스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³⁷⁾ 그로티우스는 제1권, 제1장에서 jus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논리를 전개한다. 그로티우스는 jus의 의미를 여럿으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하도록 해주는 도덕적 자질”이다.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jus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권리이다. 예컨대, jus를 가진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법적인 제재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보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다른 권위 기관의 허가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적 개념과 대조를 이룬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jus는 “정당한 사물 그 자체”를 가리킨다. jus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합치할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로티우스의 jus가 주관적인데 반해 아퀴나스의 jus는 객관적이다. 그로티우스의 jus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아퀴나스의 jus는 개인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이다.³⁸⁾

37) Draper, G.I.A.D., “Grotiu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Ideas about War”, in Bull Hedley(eds.) *Hugo Grotiu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194. Kingsbury, Benedict, and Roberts, Adam, “Introduction : Grotian Though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ibid.*, pp.3~4.

38) John Miller, “Hugo Grotiu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pp.207~208; Francis Oakley, *Natural Law, Laws of Nature, Natural Right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History of Ideas*, p.181. 오클리는 이러한 의무에서 권리로의 이행이 홉스와 그로티우스를 넘어 14세기의 오캄에게서 엿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로티우스의 근대적 개념은 ‘개인’과 ‘권리’의 탄생 선언이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에서 전쟁의 권리를 이끌어낸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의 근원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 보존 욕구”와 “사회성의 요구”라는 두 개의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³⁹⁾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정당하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권리이며 자유이다. 심지어 인간은 자신을 노예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노예제 역시 정당하다. 어쨌든 인간의 자기보존 권리는 자연이 준 권리, 즉 자연권이다. 전쟁은 자연권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하여 자기보존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기보존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인간의 두 번째 본성인 “사회성의 요구”이다. 자연권을 통제하는 자연법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짐작하듯이 그로티우스의 사상은 홉스의 사상과 대단히 비슷하다.⁴⁰⁾ 루소는 그로티우스와 홉스가 동일한 사상을 공유했음을 정확히 지적했다.⁴¹⁾

중세의 자연법 이론이 자연법에서 자연권을 도출한데 반해, 그로

39)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서문, 제6장-제7장.

40) 홉스는 그로티우스를 읽었으며, 그로티우스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96~98, 135.

41) 루소의 다음 구절을 유명하다. “정치법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생겨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서 우리 모든 학자들의 스승인 그로티우스는 한낱 어린아이에 게다가 더 나쁘게도 정직하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로티우스를 하늘 높이 떠받들고 홉스에게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두 작가를 읽거나 또는 이해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된다. 사실인즉 두 작가의 원리는 정확히 일치하나, 오직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다. 방법론에서도 다르기는 하다. 홉스는 퀘변에 그로티우스는 시인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머지에서 같은다”(『에밀 또는 교육론』, 제2권, 476쪽).

티우스는 자연권에서 자연법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의 구성 자체가 그러하다. 그로티우스는 책의 전반부에서는 전쟁의 ‘자연권’에 대해, 책의 후반부에서는 전쟁의 ‘자연법’에 대해 논의한다. 따라서 책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그로티우스는 호전적인 인문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호전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책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로티우스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하려는 평화주의자이다.

그로티우스에 대한 평가에 앞서 기억할 것은 근대의 많은 인문주의자들, 예컨대, 프랜시스 베이컨, 토마스 모어,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도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예찬했다는 사실이다.⁴²⁾ 나아가, 그로티우스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교도들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어떤 종교든 최소한의 자연법을 지키는 한 관용되어야 한다.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스도교 역시 이교도들에 의해 관용되어야 한다.⁴³⁾ 이러한 이야기는 인노켄티우스 4세의 이교도 징벌론과 분명히 다르다.⁴⁴⁾

42)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칸트는 문명사적 관점에서 전쟁을 옹호한다. “우리는 문명화된 국가를 억압하는 가장 큰 악은 전쟁 - 과거나 현재에 벌어진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늘어나는 준비 - 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 상존하는 두려움이 국가의 수반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국가 내에서의 동일한 문화 혹은 계급들의 긴밀한 유대를 여전히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매우 억압적인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그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간헐적으로 예상치 못한 침입만 받을 뿐 강력한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중국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문화가 현 단계에 머무는 한, 전쟁은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오직 문화가 충분히 발전했을 때에만 -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만이 안다 - 영원한 평화가 가능해지고 우리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ibid.*, 217-8에서 재인용) 헤겔 역시 칸트의 뒤를 이어 전쟁의 문명사적 기능을 찬양한다. “전쟁과 용기는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André Corvisier, *La Guerre. Essais historiques*, PUF, 1995, p.315).

43)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3권, pp.1041~1050.

『전쟁과 평화의 법』을 쓴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권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다. 제2권의 제22장 “전쟁의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와 제23장 “전쟁의 의심스러운 이유에 대하여”에서의 그로티우스는 평화주의자이다. 그로티우스는 오로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벌이는 전쟁,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벌이는 예방전쟁이나 선제타격 등을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로티우스가 전쟁의 인문주의적 계보에 속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그는, 앞에서 자연법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했을 때와는 달리,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더라도 이미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들이 악하다거나 잘못된 신을 섬긴다거나 어리석다거나 하는 이유로 전쟁을 벌이고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너그러움, 보은, 동정심, 자비심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전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전쟁의 이유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수단이다. 제24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성급하게 전쟁에 뛰어들지 말 것”을 권한다. 전쟁에서 허용되는 수단과 허용되지 않는 수단의 기준 역시 자연법과 국제법으로 정해진다.

제3권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제’를 권한다. 제11장 “정당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권리의 절제”에서는, 여성, 어린이, 비무장인, 농민, 상인, 포로 등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제12장 “적의 국가를 파괴하는 데에 있어서의 절제”에서는,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자비한 파괴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제13장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에 대한 절제”에서는 정당한 전쟁이라 해도 물건을 빼앗는 것은

44) 인노켄티우스는 이교도들이 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고,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입국을 막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도들은 옳지만 이교도들은 그르기 때문이다(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60~61).

죄악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비의 규칙은 법의 규칙보다 더 멀리 미치기 때문이다. 행복한 도시는 약탈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과 재산은 보호해야 하며 상인들의 상거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장 “포로에 대한 절제”에서는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예에게도 공평함과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 제15장 “제국을 획득하는 데 절제”에서는 전쟁으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이웃을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로티우스는 정당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재산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신하의 군주에 대한 저항은 절대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군주가 자연법이나 신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면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군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군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해서는 안된다. “부모가 정당하면 사랑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참아라”라는 성서 말씀처럼, 군주의 행위를 참아야 한다.⁴⁵⁾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군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안된다.⁴⁶⁾ 이러한 절대군주론 역시 홉스에게 계승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의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적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나 3년 동안 파문당했다는 이야기를 한다.⁴⁷⁾ 평화를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와 ‘휴머니티’에 위배되는 것이다.⁴⁸⁾ 싸우는 것이 합법적이라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신성하다.⁴⁹⁾ ‘결론’ (“신의를

45) *ibid.*, 제1권, p.338.

46) *ibid.*, 제3권, p.1539.

47) *ibid.*, 제3권, p.1150.

48) *ibid.*, 제3권, p.1456.

유지하고 평화를 모색할 것을 권함”)은 완전한 평화의 메시지이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동물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비와 휴머니즘”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승리보다 낫다! 이 지점에서 그로티우스는 “악한 평화는 선한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한 에라스무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했던 그 에라스무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5. 맺음말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재앙이며 인간이 피해야 하는 재앙이지만, 인간은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서양의 고대는 전쟁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던지,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스도교의 도래와 함께 전쟁 자체에 대해 회의심이 일어났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전쟁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정당한 전쟁’ 개념을 만들어 전쟁을 방어전쟁으로만 국한하였으나, 이교도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전쟁도 줄이거나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교도와 이단들에 대한 공격전쟁을 부추기도 했다.

그로티우스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이 빈번했고 또 전쟁이 사회 변혁의 추동력이었던 소위 “군사혁명”의 시대였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과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토착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야만적인 전쟁을 목격하면서, 전쟁과

49) *ibid.*, 제3권, p.1182.

평화의 ‘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자연법에 근거에서 정당한 전쟁을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당한 전쟁은 전쟁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할 때에만 정당했다. 그로티우스는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 전쟁의 정당한 수단과 부당한 수단 등을 구분함으로써 전쟁의 야만성과 참혹함을 줄이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리차드 퉁이 그로티우스를 호전주의자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근거해서 부당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자연법은 오히려 식민지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 국가간의 문제에 있어서 자연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1795년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그로티우스를 성서에 나오는 욱의 불행을 위로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실패한 위무자”(sorry comforter)라고 평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전쟁과 나폴레옹에 열광한 칸트 역시 실패한 위무자라는 평을 면하기 힘들다.⁵⁰⁾ 자연법이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그로티우스의 평화주의적인 의도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로티우스의 시대는 종교가 지배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가던 시대이다. 기독교인들 사이의 야만적인 종교전쟁에 실망한 지식인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그로티우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였다.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한 사람이며, 신이라도 자연법을 어길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은 종교가 아니라 자연법으로 평화를 구하려는 ‘신’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50)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221~222.

(원고투고일: 2014.4.1, 심사수정일: 2014.5.14, 게재확정일: 2014.5.20)

주제어 : 그로티우스, 전쟁, 평화, 정당한 전쟁, 자연법, 자연권

<ABSTRACT>

Natural Law and War

Focusing on the Law of War and Peace by Hugo Grotius

Kim, Eung-jong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dea of Hugo Grotius. In the history of the natural law, he is considered as the father of the modern natural law, for he liberated the natural law from the shadow of the medieval theology. As the medieval natural law theorists thought the origin of the natural law to be the divine law, they didn't apply the natural law to the American Indians and the Asians who were non-Christians. But the modern natural law of Hugo Grotius applied it to these kinds of people.

Grotius inherited the traditional 'just war' theories, and extended them by the natural law theory. It was not the Christianity but the natural law that justified the frequent wars in the modern era. Focusing on this side, some scholars judge Grotius to be belligerent. This judgment is the result of stressing the "natural right" of the war described in the first part of the Law of War and Peace. The second part of this book is focused on the "natural law" of the war, which controls the natural rights and keeps strict guard over the unjust wars and the unjust means of war. The intention of Grotius being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this article regards him not as a belligerent natural law theorist but as a pacifistic natural law theorist.

Grotius sought to control the unjust wars by means of the natural law, but contrary to his intention, the natural law was used to justify the contemporary colonial wars. For the natural law didn't have any leg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Emmanuel Kant denounced

him as “a sorry comforter” in his “Toward the eternal peace” in 1795. But it is undeniable that Kant who was enthusiastic about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and Napoleon was another sorry comforter. Even though the natural law failed to bring peace, the pacifistic intention of Hugo Grotius should not be neglected.

Key Words : Grotius, War, Peace, Just War, Natural Law, Natural Right